



고등교육법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- 교육부 (지역혁신대학지원과 - 대학재정) 044-203-6925
- 교육부 (교육데이터담당관 - 교육통계조사) 044-203-6632
- 교육부 (인재양성정책과 - 대학교원) 044-203-6943
- 교육부 (인재양성정책과 - 대학강사) 044-203-6840
- 교육부 (인재양성지원과 - 학사운영) 044-203-6931, 044-203-6933
- 교육부 (고등직업교육정책과 - 전문대학) 044-203-6417
- 교육부 (평생직업교육기획과 - 사이버대학) 044-203-6368
- 교육부 (교원양성연수과 - 교육대학) 044-203-6504
- 교육부 (대학규제혁신추진단 - 기타) 044-203-6911
- 교육부 (대학경영혁신지원과 - 학교설립) 044-203-6863
- 교육부 (인재양성정책과 - 대학정원) 044-203-6916

제3장 학교 <개정 2011. 7. 21.>

제1절 통칙 <개정 2011. 7. 21.>

제19조의3(인권센터) ① 학교는 교직원,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·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,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
2.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
3. 성희롱·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
4.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 3. 23.]

부칙 <제19430호, 2023. 6. 9.> (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)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

제21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⑤까지 생략

⑥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제2항제6호 중 “국가균형발전”을 “지역균형발전”으로 한다.

⑦부터 <54>까지 생략

제22조 생략